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2015년도 제1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1

(2015. 9. 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1. 안 건 명

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년 8월 24일(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5년 8월 25일(화)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2015.6.4. 법률 제12738호) 제130조

나. 「지방재정법」 (2015.5.13. 법률 제13283호) 제45조

[검토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1. 예산규모

가. 마포구(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82,893,864	465,716,810	17,177,054	36.88
일반회계	413,949,384	403,666,782	10,282,602	2.55
특별회계	68,944,480	62,050,028	6,894,452	11.11

나. 기획경제국(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8,714,628	49,593,568	9,121,060	18.39
지역경제과	1,648,135	1,807,735	△159,600	△8.83
일자리진흥과	2,943,371	2,892,482	50,889	1.76
재무과	54,123,122	44,893,351	9,229,771	20.56

다. 기획경제국(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일반회계	14,451,385	11,950,980	2,500,405	20.92

라. 기획경제국 조직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4,451,385	11,950,980	2,500,405	20.92	
일 반 회 계	기획예산과	6,480,128	4,318,041	2,162,087	50.07
	지역경제과	1,631,946	1,506,738	125,208	8.31
	일자리진흥과	4,513,412	4,330,145	183,267	4.23
	재 무 과	380,524	387,240	△6,716	△1.73
	세 무 1 과	561,069	558,157	0	0
	세 무 2 과	884,306	847,747	36,559	4.31

2.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기획 예산과	예비비	4,518,887	2,356,800	2,162,087
	01)예비비	4,518,887	2,356,800	2,162,087
	1)일반 예비비	4,518,887	2,356,800	2,162,087
지역 경제과	민간이전(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51,109	226,109	2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63,570	38,570	25,000
	1)행사비용지원	25,000	0	25,000
	시설비및부대비(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34,000	0	134,000
	01)시설비	134,000	0	134,000
	1)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	134,000	0	134,000
	시설비및부대비(도화, 용강동 활성화사업)	0	190,000	△190,000
	01)시설비	0	190,000	△190,000
	1)도화,용강 상권연결을 위한 미디어월 설치	0	190,000	△190,000
	반환금 기타	211,501	55,293	156,208

지역 경제과	01)국고보조금 반환금	104,090	0	104,090
	1)망원시장 보안등 LED 교체	76	0	76
	1)망원동 월드컵시장 CCTV교체설치	2,118	0	2,118
	1)아현시장 비상소화전 설치	654	0	654
	1)도화,용강 활성화사업 상징조형물 및 LED설치	85,315	0	85,315
	1)도화,용강 활성화사업 스토리 조형물설치 및 공원리모델링	15,927	0	15,927
	01)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118	0	52,118
	1)착한가격업소 지원	953	0	953
	1)대부업 관리감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43	0	43
	1)망원시장 보안등 LED 교체	24	0	24
	1)망원동 월드컵시장 CCTV교체설치	636	0	636
	1)아현시장 비상소화전 설치	436	0	436
	1)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민간행사보조	102	0	102
	1)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민간경상보조	655	0	655
	1)도화,용강 활성화사업 상징조형물 및 LED설치	25,595	0	25,595
	1)도화,용강 활성화사업 스토리 조형물설치 및 공원리모델링	6,371	0	6,371
	1)서울형특화산업 진흥계획(2013년 보조금)	7,272	0	7,272
	1)서울형특화산업 진흥계획(2014년 보조금)	107	0	107
	1)농작물 직거래장터 운영	262	0	262
1)유기동물 위탁관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	9,662	0	9,662	
일자리 진흥과	인건비(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40,092	172,240	67,852
	01)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0,092	172,240	67,852
	1)임금 및 기타수당(4대 보험료 포함)	240,092	172,240	67,852
	반환금 기타	115,415	0	115,415
	01)국고보조금 반환금	68,378	0	68,378
	1)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51,917	0	51,917
	1)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6,411	0	16,411
	01)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7,037	0	47,037
	1)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40,448	0	40,448
	1)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274	0	6,274
	1)가계부채위기가구지원 서울나눔일 자리사업 집행잔액	315	0	315

재무과	포상금(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904	10,000	△7,096
	01)포상금	2,904	10,000	△7,096
	1)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1,404	8,500	△7,096
	1)신규발굴세원 징수 포상금	1,500	1,500	0
	반환금 기타	380	0	380
	01)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0	0	380
	1)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380	0	380
세무2과	포상금(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	37,759	1,200	36,559
	01)포상금	37,759	1,200	36,559
	1)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36,559	0	36,559

3. 간주처리 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간주처리액	간주회차	간주처리일
기획경제국 : 30건		1,006,865		
지역경제과	소계	99,381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 사업	14,570	3	2월 5일
	전통시장 가는날 사업	5,500	3	2월 5일
	대부사업 자치구 위임에 따른 지원	6,972	7	3월 11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지원	12,341	10	4월 10일
	전통시장가는날사업	13,500	11	4월 20일
	주부물가모니터단 활동비 교부	1,440	14	5월 29일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시장매니저)	6,970	14	5월 29일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방지 물품 구매 지원	14,400	15	6월 12일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방지 물품 구매 지원	5,581	17	6월 22일
	대부사업 자치구 위임에 따른 지원	5,577	18	6월 30일

부서명	사 업 명	간주처리액	간주회차	간주처리일
	전통시장 가는날 사업(3차)	5,000	19	7월 9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3차)	3,060	20	7월 21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차)	2,400	20	7월 21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1차)	2,070	20	7월 21일
일자리 진흥과	소계	887,61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41,744	3	2월 5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40,436	4	2월 10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1~2월)	70,922	5	2월 16일
	전문인력 지원사업(3~4월)	39,036	9	4월 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3~4월)	64,312	9	4월 1일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2분기)	41,656	9	4월 1일
	혁신형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	85,000	11	4월 20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5~6월)	34,388	14	5월 29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5~6월)	61,516	14	5월 29일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117,000	14	5월 29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81,600	18	6월 30일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10,000	20	7월 21일
재무과	소계	16,962		
	공유재산관리사업	4,000	8	3월 31일
	공유재산관리 보조	6,481	11	4월 20일
	시유재산관리	6,481	14	5월 29일
세무 1과	소계	2,912		
	시세입분야 자치구 지원사업	2,912	3	2월 5일

[검토결과]

1. 예산현황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657억 1,681만원에 20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4,036억 6,678만 2천원 포함된 171억 7,705만 4천원이 증가(일반회계는 102억 8,260만 2천원, 특별회계는 68억 9,445만 2천원)하여 총 예산은 4,828억 9,386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 약 2.99%인 144억 5,138만 5천원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임.
- 2015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14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37억 3,221만 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2,222만 3천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2억 173만원을 증액하여 총 382억 5,61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함.
- 2015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30건에 10억 686만 5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19억 5,098만원 대비 약 20.92%에 해당하는 25억 40만 5천원이 증액된 144억 5,138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

2.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현황

- 2015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세무1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43억 1,804만 1천원에 21억 6,208만 7천원이 증가한 64억 8,012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5억 673만 8천원에 1억 2,520만 8천원이 증가한 16억 3,194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액 43억 3,014만 5천원에 1억 8,326만 7천원이 증가한 45억 1,34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3억 8,724만원에 671만 6천원이 감소한 3억 8,052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 8억 4,774만 7천원에 3,655만 9천원이 증가한 8억 8,430만 6천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용>

-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일반예비비로 21억 6,20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이전금으로 민간행사사업 행사비요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 시설비로 1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망원시장 보안등 LED 교체외 4건에 1억 40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외 12건에 5,211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도화,용강동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화,용강 상권연결 미디어월 설치 시설비로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도화,용강동 활성화사업 >

1. 사업개요 : 도화,용강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적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3. 총사업비 : 2억 1,300만원
4. 사업내용
 - 가. 경영현대화 사업
 - 스토리 발굴 및 적용사업, 지역연계 및 동아리 육성, 축제 및 상인 콘서트 등 이벤트 개최, 상권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인력공동 및 양성 프로그램, 임대용부스 설치사업, 스토리텔링 기념품 제작 및 판매사업
 - 나. 시설현대화 사업
 - 지역상징물 및 LED 조명설치, 상인교육장 마련, 스토리텔링 유형화 사업 등
5.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제19조의 5
 - 2011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지원대상 선정(중기청)
6. 추진사항
 - 2011. 5. 13. :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성전(중기청 공무)

- 2011. 11. 24. : 도화·용강 활성화 사업구역 지정 고시
- 2012. 7. 12. : 도화·용강 활성화 사업계획 승인 고시
- 2015년도 사업 : 도화·용강 상권연결을 위한 미디어월 설치

- 일자리진흥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잔액으로 6,785만 2천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외 1건에 6,837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증액 편성되었고, 사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외 2건에 4,703만 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 2014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709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1. 사업개요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 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3. 총사업비 : 8억 4,546만 8천원(연례 반복적 사업)
 - 당해연도 예산액 : 1억 6,192만 2천원
4. 사업내용
 -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후 공부정리 및 누락 재산 발굴
 - 공유재산 현황조사를 통한 용도별 재산의 재분류 확행
 - 각종 재해대비 공유재산(건물, 시설물, 영조물) 공제등록
5.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6. 추진계획
 - 공유지 실태조사 : 현장위주의 재산 보존상태 조사와 공부 일치여부 확인
 - 공유재산 공제등록 : 전년대비 증감 및 변동현황 지방재정공제회 공제등록

-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4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3,655만 9천원을 포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 >

1. 사업개요 :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로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3. 총사업비 : 1억 6,371만 1천원
4. 사업내용
 - 세외수입 온라인 고지서 제작, ○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 활성화 추진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상시 징수체계 구축
 - 납세편의제도 적극 홍보(온라인 납부)
 - 세외수입 직무교육 및 실무교재 구입, ○ 세외수입 우수부서 격려
5.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6. 추진계획
 - 세외수입 우수부서 표창(연 1회)
 - 세외수입 실무교육(연 2회)
 - 효율적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업무지도
 -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연 4회)

3. 검토의견

- 검토의견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2015년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 등(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포함)복지 사업비를 국가 및 서울시에서 미편성하여 향후 국비 및 시비의 추가지원이 없을 시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 예비비 21억 6,208만 7천원을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복지를 위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로 편성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규정에 마포구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에 편성되는 예비비(추경 포함) 총액은 45억 1,888만 7천원으로, 이는 2015년도 마포구 예산 총액(추경 포함) 4,828만 9,386만 4천원의 1% 이내로 예비비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음.

- 이번 추경예산의 28%를 차지하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망원시장 보안등 LED 교체외 4건에 1억 409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외 12건에 5,211만 8천원, 일자리진흥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외 1건에 6,837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외 2건에 4,703만 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재무과에서는 시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실상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등은 자치구 예산에서 중요한 세출재원으로 '제2의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예산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인한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반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구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예산편성 부서에서 지방자치법 및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예산관계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더불어 우리 구의 예산부담 능력을 감안한 비용추계서인지 다시한번 확인함은 물론 명확한 주관부서 의견 제시로 조례만 제정되고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